



구 분		
열람·서명자	연세대학교 교수	성명 이종수 (서명)
	(주)조선방송 사내변호사	성명 원은자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과장	성명 김순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 3.(화) 14:00 ~ 15:29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조태준, 이종수, 이승민, 원은자, 권현정, 김순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6건
 - (2023-1) : 담당 공무원 등과 그 상급자 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청심사 결과 및 결정문 등에 대한 공개 청구
 - (2023-2)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 (2023-3)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 청구
 - (2023-4)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개 청구
 - (2023-5) : 2022.10.29.~현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의원 자료 제출 요구 현황 및 제출한 요구자료 현황
 - (2023-6)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1) : 기각 - 비공개
- (2023-2) : 인용 - 공개
- (2023-3) : 기각 - 비공개
- (2023-4) : 각하
- (2023-5) : 기각 - 비공개
- (2023-6) : 기각 - 비공개

【 개 회 】

〈○○○ 간사〉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팀장 000입니다.

2023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시작에 앞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신년에 저희 디지털정책관님하고 정보공개담당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 국장님이랑 저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올해부터는 당연직 위원이신 저희 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심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부득이 지금 바로 이어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00 국장님 대신해서 새로 오신 정보공개담당관 000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저희 000 과장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령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의 000 과장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먼저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반갑습니다.

<○○○ 간사>

-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국장님도 참석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로 하지만 다음이나 다다음, 그러니까 2월 중으로는 대면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일정 한번 잘 조정해서 대면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000입니다.

오늘 심의회에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이의신청 6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각 안건의 간사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의안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응답,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3-1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담당 공무원 등과 그 상급자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
청심사결과 및 결정문, 행정 재송결과 및 판결문 등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 상정인데요.

의안번호 제2023-1호 인사과, 법무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인사과 000 주무관입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법무담당관 000 주무관입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법무담당관 000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 세 분 주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두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를 요청하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 지금 이의신청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소송자료 준비를 위한 인적정보가 담긴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혹시 공개를 승인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이전에?

<○○○ 주무관>

- 이전에도 가끔 이런 건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비공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개인정보 신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공개하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비공개하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별지를 보니까 이분들 성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땡땡 그다음에 정땡땡 씨가 실질적으로 현재 징계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징계를 안 받으신 상태인가요?

<○○○ 주무관>

<○○○ 위원장>

- [redacted]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별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의신청의 요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익적 성질을 갖고 있어 피고 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다라고 이의신청인이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익적 성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쓰신 걸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이게 아무래도 변호사 자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피고, 청소년 법인 쪽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공익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공익적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 위원〉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보면 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청구인이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미 분명하게 사후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

련된 정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을까?

혹시 관련 재판부에서 현재 징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 주무관>

-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 위원>

- 저도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가 소송자료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소송 중이니까 해당 재판부 사건번호까지 있는데, 해당 재판부의 사실조회라든가

문서송부촉탁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조금 드는데 혹시 그렇게 안내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 주무관>

- 안내한 적은 없었고, 저희는 일단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었습니다.

<○○○ 위원>

-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11조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는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회의하고 위원명단, 또 발언내용 이런 것 비공개를 하라는 근거규정인데요. 여기에 따르는 징계처분결과는 사실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 소청규정 11조가 처분결과까지 비공개하라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조항 하나로 지금 청구인이 청구한 모든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 주무관>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 4호를 들었는데요. 위원회의 회의내용도 그렇지만 징계결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의 실명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박이라든지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가 이것 말고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국정감사 때도 징계결과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 잠깐만, 국정감사에서 징계처분결과, 그러니까 누가 감봉 몇 월을 받았다 이것을 공개를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 주무관>

- 통계 정도는 공개를 하는데 개별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

- 그게 위원회 그거랑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을 들어서 그러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방공무

원 소청규정 11조가 과연 위원회의 그런 처분결과까지를 비공개하라는 취지인지는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한국청소년연합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요. 혹시 1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주무관>

- 저희는 지금 소청 담당부서로 와 있는데요. 서울시와 이 건 관련한 소송은 법률지원담당관 관련이고, 해당 부서는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정보공개청구로 들어왔는지 저도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 주무관>

- 네.

<○○○ 위원장>

- 000 위원님이 잠깐 접속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담당부서 주무관님들께서는 잠시 퇴장 하셨다가 저희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제 의견은 아까 000 위원님, 그다음에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호랑 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님.

<○○○ 위원>

- 저는 4호 사유로만 비공개 기각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6호 사유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개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

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청구인이 피고 측의 소송대리인이라 그리
짱아요. 그러니까 소송대리인이 사실 해당 사건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거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좁게 보자면 해당 징계대상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같은 거는 자기가 다 그걸 커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만큼은 6
호는 빼고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고 해서 4호만으로 기각을 하는 게 어떨
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는 이게 애매한 게 4호를 적용해야 되는 사안인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입
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서 말하는 재판은 해당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정보는 재판 자체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재
판의 주된 쟁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증거자료 정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또 너무 넓게 해석하게 되

면 그게 선례가 돼서 향후에 또 4호 사유가 너무 넓게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거꾸로 그냥 6호로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000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2년 넘게 여기 위원회 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좁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판에 관련된 증거까지 해서 넓게 해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또 제가 다른 곳에서도 들은 바로는 그렇게 넓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견입니다. 사견으로는 이 법의 취지가 과연 그렇게까지 넓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단 제 사견은 6호 사유에는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4호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하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이 재판에서 두 분에 대한 ██████████은 직접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을호증에 관련돼 있는, 을호증에 간단히 언급돼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서울시 공무원이 ██████████ 그래서 이거를 아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청소년연합회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구 이의신청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니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재판 중인 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접적으로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호보다는 6호에서 공무원의 징계내역이나 징계처분사실 같은 경우는 사생활로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6호로 비공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000 위원님이랑 000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 자료 자체가 재판 내용이랑 직결되기보다는 어쨌든 피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활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재판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피고 대리인으로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라든지 지금 또 항소심이기도 해서 그간의 그런 절차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6호에 해당해서 비공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 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제시하셨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11조 이 부분은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을 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 없이 그냥 6호로만 비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할까요?

<○○○ 위원>

- 저는 사견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 호만을 가지고 거부 사유를 특정해 왔는데 이 건에서만 굳이 그 조항을 병기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그러면 1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결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주무관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결과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권을 기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안전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2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에 대한 공개청구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2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000라고 합니다.

〈○○○ 위원장〉

- 주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건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서 이게 보니까 작성일이 2020년 7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서는 그동안은 공개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신청인이 청구하고 나서 부분공개가 처음 된 건가요?

<○○○ 주무관>

-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공개된 상태에서 공개가 된 자료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전에 부분공개된 부분 중에서 이제는 공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처리를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분공개 처리를 한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해당 개선계획서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길로는 노란색 형광펜 처리가 된, 구체적인 동이 명시된 그 부분만 지금 비공개된 건가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공개 사유로 소관부서에서는 처음에는 정보공개법 9조 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셨다가, 그리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고 나서 이번에 또 안전 상정을 요청하시면서 관할 세무서 쪽의 의견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과세정보나 조세정보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지금 해당 계획서에 개인에 관한 과세정보는 없잖아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만 하더라도 결국 주민세가 어떤 재정력이라기보다는 인구수에 따라서 결국 주민세의 차등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 주무관〉

- 아무래도 정확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공개 처리를 한 부분이 주민세 징수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최저지원을 받은 동과 최고지원을 받은 동의 동명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이 사업을 할 때 자료요청을 드려서 세무과에서는 이 과세정보를 저희한테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목적으로만 제공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세무과가 아무래도 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세무과에다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드렸었고.

세무과 담당 주무관계서는 이거를 지방세기본법 86조에 의거하여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정보를 제공한, 그러니까 과세정보에 대해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이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들어서 해당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신 바 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계속 기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시범사업 개선계획서에서 딱 두 군데에 각 동별의 지급액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당 동들이 드러나는 게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세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는 것 아닌가요?

<○○○ 주무관>

- 그런데 현재 세무과에서 정보를 상시로 공개를 하고 있는 과세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했을 때 주민세 정보는 구별로 얼마가 걷혔는지 징수분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동별로 얼마가 걷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동별 재정력 등 특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과세정보를 그냥 제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공

문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비공개 사유로 1호에서 타 법령에서 비공개로 위임한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개인의 어떤 납세정보나 과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비공개 사유 1호로 잡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리고 지금 5호에서도 진행 중인 어떤 사항도 아닌 게 이미 이게 2년도 훨씬 전에 끝난 사업인데 이걸 갖고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각 동별의 구체적인 최저 최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주무관>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과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취급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닌데 단순히 사업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아무래도 협조를 얻어서 사업에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과의 의견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도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 지방세기본법 86조 1항이 지금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위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정보라 한다)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자료가 이 법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
요. 과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
나요?

<○○○ 주무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무과에서 해당 내
용을 과세정보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부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부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사업부서인 저희 자치
행정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
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

-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를 받으실 때 개별적으로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의 주민세를 납부했는지를 권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취합해서 그 동의 징수분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 주무관>

-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 위원>

- 취합해서.

<○○○ 주무관>

- 네,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이나 000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

-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자치행정과랑 세무과
랑 관계에서 혹시 불편해지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 주무관>

-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된다고 세
무과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심의회에서 공개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심의 끝난 이후에 다시 참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위원장>

- 지금부터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심위원이신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아까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어느 항목에서도 이게 비공개로 판단해야 될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인용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000 위원님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은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6명 중 6명이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으로 이번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2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3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알림’ (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청구

<○○○ 위원장>

- 세 번째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3호 공원조성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담당 000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 주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건상정요청서에 보면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비공개한

결과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서나 결정서를 보면 그냥 다 비공개로 돼 있는데 부분공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질문드린 거 들으셨어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 주무관>

- 못 들었는데요.

<○○○ 위원>

- 아,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전상정요청서에 보면 이게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비공개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나 결정서 보면 그냥 심플하게 비공개한 것 같은데 부분공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주무관>

- 요청서에 부분공개라고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 네.

<○○○ 주무관>

-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 네.

<○○○ 주무관>

- 해당 문서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 위원>

- 그러면 신청인한테 일부라도 공개된 건 없는 거지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 최초에 비공개 결정을 하실 때 그 근거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12조를 드셨는데 이 운영세칙이 공개된 자료인가요? 제가 웹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법제처에도 없고.

〈○○○ 주무관〉

- 이거는 저희 내부 훈령에 따라서 만든 훈령 규정이고요.

〈○○○ 위원〉

- 그런데 보통은 행정규칙도 전부 다 법제처 사이트에는 있는 게 보통인데 이거는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쪽에 찾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이게 운영세칙 12조의 내용을 여기 적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청인 입장에서 이거를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근거규정으로 들고 비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요. 또 당장 심의하는 저도 이 12조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이게 합리적인 사유인지를 판단을 할 텐데 이 세칙 12조 자체가 뭔지를 아예 모르겠으니까 이게 조

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주무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세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세칙은 비공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판단해도 되겠지요?

<○○○ 주무관>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건가요?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하셨던데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단계가 진행돼 있는 건가요?

<○○○ 주무관>

- 요청대상 공문 내용 중에 현재 보상이 내부검토 진행 중인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한 거고요. 현재 진행단계는 보상심의 의사결정은 완료됐고요. 현재 내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공개되고 일부가 안 되더라도 전체 보상업무에는 조금 진행에 차질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담당자의 의견이신가요?

<○○○ 주무관>

- 공개될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다 일단은 비공개 상태로 심의가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겠나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났고, 비공개된 회의자료를 보면 총 7건에 걸쳐서 매수, 매입 불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7건이 엇갈리잖

아요. 그렇지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 주무관>

- 매수되기를 위해서 다 신청을 한 상태고요.

<○○○ 위원>

- 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공개되면 매수 추진이라고 결정된 해당 토지소유자분들은 협상력을 더 가지게 되겠네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

- 저는 따로 없습니다.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심의 끝난 이후에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먼저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9조 1항 5호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질문과정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겠지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자료가 일부라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공개됐을 때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서 심의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

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9조 1항 5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5호로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저도 마찬가지로 5호에 따라서 비공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하는 의견으로 5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 6명 참석위원분들께서 모두 다 5호에 따라서 해당 안건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4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해당 시군구 산업단지(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포함) 내에
2018.1.1.~2022.10.31. 허가된 건축물로서 2022.10.31.까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한 공개청구

<○○○ 위원장>

- 그러면 네 번째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호 급수운영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000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시 관내에 산업단지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 주무관〉

- 아니요, 산업단지는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 위원〉

-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그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 주무관〉

- 정보가 없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착공일이나 허가일 같은 허가대장 있잖아요, 건축허가대장. 그런 거를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부존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부분공개로 결정통지서를 보내서 정보공개청구인한테 약간 혼동을 줬다 이 의미인가요?

〈○○○ 주무관〉

- 처음에는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부존재 사항이었는데 하다 보니 약간 혼란이 있어서 비공개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 위원>

- 처음에는 부분공개로 주셨어요.

<○○○ 주무관>

- 네, 부분공개로 드렸습니다.

<○○○ 위원>

- 정보가 부존재하는데 부분공개로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면서 법
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로 하니까 청구인이 약간 혼동을 일으켜서 다시 이의신
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런 데다가 여기서 이거에 대한 설명에서 서울시 관내라고 했는데 또 성동구
로 특정한 이유는 뭔가요?

<○○○ 주무관>

- 성동구 말씀하시는.

<○○○ 위원>

- 결정통지서를 보면 성동구 관내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없어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청구인은 서울시라고 했는데 성동구라고 또 특정을 해서 의견이 나갔어요, 처음에.

<○○○ 주무관>

- 사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구마다 관할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있는 강서수도사업소만 해도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를 관할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청하는 데는 여기 강동수도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동수도사업소 담당자 쪽에서는 자기 관할지역에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대신 거고요.

<○○○ 위원>

- 전체적으로는 정보가 없다는 거지요?

<○○○ 주무관>

-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공일하고 사용승인일, 그리고 허가일에 대한 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

- 네.

<○○○ 주무관>

- 언제 이 기간에 이런 대장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데 저희는 건축대장도 없고 허가일도 없고 사용승인일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수합하거나 취합해서 가공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 그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 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인가요?

<○○○ 주무관>

- 일단은 처음부터 여기서 요청한 게 이 기간에,

<○○○ 위원>

- 이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없다.

<○○○ 주무관>

-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런 대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 위원>

- 전제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데?

<○○○ 주무관>

- 네, 이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0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왜 요청하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 자료가 청구인은 왜 필요한 건가요?

<○○○ 주무관>

-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저희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 소관부서에서는 그러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을 어떤 형태로 취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은.

<○○○ 주무관>

- 납부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앞에 전제조건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주소지에 대한 거는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거나 대장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주소지 건물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조회를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화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무관>

- 그렇습니다.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날짜, 허가일, 준공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

- 제가 질의 하나 드리자면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일종의 특별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특별부담금에 해당이 되면 급수운영과든 어디든 간에 특별부담금에 무슨 납부와 과세원부터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주무관>

- 이게 공개를 하려면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관사항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공개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수합을 하거나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간 안에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

- 그럼 소관부서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수입총액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 주무관〉

- 그런데 그것은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것은 문의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전체 사업소를 관할하지는 않거든요. 강서수도사업소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특별부담금인데, 특별부담금의 어떤 징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 주무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심의 마친 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위원장>

- 먼저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이의신청인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기간에 허가 된 건축물로서 '22년 10월 30일까지 준공된 건물에 대한 것을 전제를 달았 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면 이 뒷부분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 부존재로 각하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저도 정보 부존재로 각하 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명 중 6명이 모두 다 정보 부존재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다시 자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4호는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5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22.10.29~현재까지 귀 기관이 접수한 의원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현황 등에 대한 공개 청구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3-5호 기획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세요.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장 000입니다.

<○○○ 위원장>

-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위원>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랑 소관부서에서 나간 결정서랑 이의신청서를 보면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의원자료 제출요구 현황, 문서명, 일시, 의원명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비공개 대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문서의 내용과 의원명, 소속, 일자, 제출기한, 그리고 분배내용을 보면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분배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 문서명까지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팀장>

- 지금 내용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사항의 내용까지,

<○○○ 위원>

- 이 내용까지 전부 다.

<○○○ 팀장>

-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결정 내용에서는 감사 중인 내용이어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정보들이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팀장>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 위원>

- 목록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런가요?

<○○○ 팀장>

-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대부분 다 국정감사, 조사와 관련된 어떤 목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게 비슷한, 같은 사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예 다른 사안도 있는데 이 저희가 받은 비공개 대상 정보 전체 목록이 그냥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팀장>

- 이번에는 지금 청구인께서 10월 29일 이후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자료들이,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아마 한 90% 이상은 그런 자료인 거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시의원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는 도서구입 현황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 팀장>

- 시의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데요. 국회의원 요구자료하고 시의원 요구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요구자료 내용을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그다음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
입니다.

<○○○ 위원>

-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에 조사가 진행될 거고
그 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까지를 별도로 안내한 바가 있나요?

<○○○ 팀장>

- 저희들이 유선이나 구두로 따로 별도 안내하지는 않고요. 공식적으로 그냥 의
견으로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 위원>

- 그리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자료요구와
제출이 이루어지는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의 요구 및 자료제출은 이미 모든 기
관에서 그 내역과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내용은 어떤 법률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건지를 잘 검색을 못했어

서 그러는데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팀장>

-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국정감사라든지 조사가 끝나면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조사 실시할 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다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조사 관련해서 국정감사위원회명으로 또 따로 요구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모든 기관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질문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도 중앙부처는 해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엑셀파일로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이렇게 중앙부처별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팀장>

- 서울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해당 목록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지 이런 사항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감사를 위해서 위원회명으로 요구했던 그 자료들이 국회 도서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쪽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아니, 제 질문은 국정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 때 중앙부처들이 그렇게 공개하듯이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어떤 그런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그런 목록을 공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 묻는 것이었는데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시스템적으로는 없는 것 같네요.

<○○○ 팀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는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목록을 이렇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질의 없으시면 팀장님께서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심의 끝난 이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팀장>

- 네.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퇴장)

<○○○ 위원장>

- 먼저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설명을 들어보니 어쨌든 해당 자료들이 현재 국정조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좀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청구인은 여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다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5호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청구인이 되게 포괄적으로 국회나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그대로 얻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보공개청구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지 이거를 국회나 시의회의 똑같은 지위에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나 소속 의원 뭐 이런 것들은 국회나 시의회를 통해서 시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나 시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5호를 통해서 비공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어려운 부분이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의신청서에서는 자료제출 목록만 요구하는데도 안 주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거는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했는지 그 제목만 이렇게 엑셀파일로 정리한 거를 내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청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때마다, 물론 끝나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 있습니다. 몇 년도 국정감사 자료제출 목록 해서 엑셀파일로 목록들이 다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록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부당하느냐인데, 다만 문제는 여기서도 어떤 감사를 딱 그때 제출된 목록 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많이 넓게 한 것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의신청서에서는 목록만 요청을 하겠다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기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상이 조금 더 특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앞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다른 위원들 종합자료에 그 아래에 있는 유사사례 2번을 보시면 이게 2021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안인데 국회 각 의원실이 서울시에 제출요구한 자료목록, 그때 아마 000 위원장님하고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건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9조에서 비공개로 위임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거는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9조로 근거를 잡아서 비공개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해당 엑셀파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요청한 부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야 될까 조금 의문점이 있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애매한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미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에 따라서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비공개 기각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팀장님께서서는 다시 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입장)

저희 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6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소방설계도서, TAB보고서, 감리보고서) 에
대한 공개 청구**

〈○○○ 위원장〉

- 여섯 번째 안건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호 예방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전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관〉

- 저는 서울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000라고 합니다.

〈○○○ 위원장〉

-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3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소방설계도서, TAB보고서, 감리보고서 이 3개의 자료를 공개

신청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 지도관>

- 청구인이랑 직접적인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은 없고요.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정보가 공개됐을 때 이 청구인이 가져갈 어떤 편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금 선생님께서는 모르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 지도관>

- 그렇습니다마는 공개인이 정보를 가져감으로써 이 세 가지 정보와 관련된 업체가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이 3개의 자료가 각각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체적인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지도관〉

-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면을 생각하시더라도 복잡한 도면이 아니고 일반도면을 그리더라도 그 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 법적인 규정에 맞춰서 업체 고유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적인 기술이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지도관〉

- 올 초에 본 예방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다른 청구인한테 들어왔던 사례가 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처리를 했으나 이의신청은 제기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이번에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 건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10일 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고 연장할 때도 10일인데 지금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청구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답변이 이미 늦게 왔다. 그러니까 공개로 간주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게 답변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 지도관>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거는 관련이... 지금 공개청구일이 11월 28일 이고요. 11월 28일에서 연장을 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내에 있는 가능한 일수 내에 저희가 비공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청구인이랑 통화를 했을 때 청구인은 시스템상 분명히 정보통신망으로 결정 통지를 받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청구인은 왜 본인한테 직접적인 통지가 없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통화내용을 녹취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오해에서 청구인께서 신청하셨던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받음으로써 그런 오해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사유에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를 2022년 12월 26일에 받았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12월 26일에 받은 거는 뭔가요?

<○○○ 지도관>

- 26일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방서 예방과에서 통지를 했고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통지가 종료가 된 날짜입니다, 26일이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고 26일에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그 당일 아니면 그 전날에 제가 통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 위원>

- 제가 질의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비공개 의견으로 제일

아래에 보면 여의도 나라키움빌딩이 어쨌든 기재부 소유 건물인데 지금 행정관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테러 등의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 지도관>

-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몰라도 소방 관련 전문가들이 공개요청을 한 해당 자료의 도면을 보면 어떤 소방 관련 취약점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나요?

<○○○ 지도관>

- 소방 관련된 취약점이요?

<○○○ 위원>

- 네.

<○○○ 지도관>

-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관련된 취약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 그렇지요.

<○○○ 지도관>

- 일반적인 테러나 어떤 경비시설에 대한 위험성 말고 그냥 일반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 그러니까 현재 테러 등에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하셨기 때문에 요청 대상의 해당 도면들과 내용들을 갖고서 이 건물에 어떤 부분이, 뭐 경비나 또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 지도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상에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 평면도가 나와 있을뿐더러 그 평면도만 보더라도 계단의 위치, 복도, 그리고 어떤 실에 어떤 방이 위

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 정보공개 운영안내서에도 설계 관련된 도면을 공개를 할 때는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써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요청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설계업체라든가 감리업체를 법인으로 지금 특정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 지도관>

- 법인사업자가 맞습니다. 3개 업체가 법인사업자가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나라키움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아니라 지금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해당 감리도라든가 설계도라든가 그것을 작성한 회사의 법인이라는 거지요?

<○○○ 지도관>

- 그렇습니다. 자료를 생성한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그 업체는요.

<○○○ 위원>

-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공개 사유로 소관부서에서 해당 소방 설계업체, 감리업체뿐만이 아니고 아래에 보면 또 이게 공개될 경우 테러 악용 가능성, 현재 행정관사로 사용되면서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 해서 거의 망라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비공개로 결정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특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 지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사유 중에 법인의 고유정보에 관련된 거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에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 테러 등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7호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질의 없으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심의 끝난 이후에 다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도관>

- 고생하셨습니다.

(소관부서 지도관 퇴장)

〈○○○ 위원장〉

- 저는 9조 1항 7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유사사례에 보면 종로소방서 관내 2018년 소방감리보고서 이거를 기각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의
망라적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공개 의견이기는 한데
비공개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은 이런 설계도면이 공개돼서
혹시 해당 건물의 안전이나 무슨 경비나 이런 데 그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몇 호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4호가 해당되나요?

어쨌든 저는 비공개 기각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일단 비공개로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비공개 의견이고요. 아마 처음부터 기간 내에 빠르게 비공개 의견을 줬으면 이의신청이 왔을까 싶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20일 간주 거부 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한 거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몇 호로 가야 될지는 저도 생각은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7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 7호로요?

<○○○ 위원>

- 네. 그런데 3호도 같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7호는 해당하는 것 같고,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7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7호에 따라서 비공개인데요.

3호면 여기서 지식재산권을 언급한 게 있으니까 3호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것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위원님께서 7호는 언급을 해 주셨고, 3호를 언급하신 분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7호로만 비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 000 위원님도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그러면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9조 1항 7호에 따라서 기각하는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관부서 지도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6명 중 6명이 이의신청건을 9조 1항 7호에 따라서 기각한
다는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폐 회 】

<○○○ 위원장>

- 이것으로 2023년 1차 정보공개심의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
음번 회의 때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2심 담당했었고, 현재는 1심 담당하고 있는 000 주무관입니다.

제가 이번 1월에 인사발령 예정이어서 위원님들 얼굴은 못 뵙고 가는데요. 그동안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자 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 네, 팀장님.

<○○○ 간사>

- 저희 000 주무관이 16일자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석자 전원〉

- 축하드립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 위원〉

- 팀장님, 저희들이 마침 그래도 위원 중에 세 사람이 대학에 있어서 2월에는 계속 방학이니까 2월 방학 때 오픈모임을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하시지요.

〈○○○ 간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자 전원〉

- 수고하셨습니다.